

1편  
학교법인

학교법인 햇불학원 정관



# 학교법인햇불학원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기본이념과 진리, 자유, 사랑의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초교파적인 위치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며 국가 및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햇불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미로31길,70(양재동)에 둔다.<개정 2016.3.1.>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8.10.>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0.>

## 제 2 장 자산과 회계

###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2006.10.17>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삭제 2006.10.10.>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 제 3 장 기 관

###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을 포함한다) <개정 2004.9.24.>
2. 감사 2인

**제18조의2(상근임원)** ① 제18조의 임원 중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2. 상임이사
-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삭제 <2012.8.10.>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7.>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8.30.>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18.>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삭제 <2008.3.18.>

[본조신설 2006.10.17]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안수집사 이상의 기독교신자로서 학교법인 햇불학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20조의4(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제20조의2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2인

2. 대학평의회 3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개방이사의 추천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18.]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0.17.>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3.3.21.>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삭제 <2006.10.17.>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신설 2006.10.17.><개정 2008.3.18.>

⑦ 제6항의 감사추천 등에 대해서는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자격)를 준용한다.<신설 2006.10.17.>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개정 2005.8.30.>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 할수 없다.<개정 2006.10.17, 2012.8.10.>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학교법인의 교직원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 2 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와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3.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와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개정 2006.10.17.>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0.17.>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8.10.>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2021.9.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12.8.10.>

[본조신설 2006.10.17.]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06.10.17.>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0.17.>



## 제 4 장 해 산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9.8.>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9.8.>

**제34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8.10.>

## 제 5 장 교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35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17., 2008.3.18., 2020.3.1.>

② 총장이외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03.3.21, 2012.8.10.>

###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8.10, 2013.2.15.>

나. 부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 교 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2.8.10.>

### 2. 급여

정관 제41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3. 근무조건

교수 강의담당시수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신설 2003.3.21.>

④ 삭제 <2012.08.10.>

⑤ 조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03.3.21.>

⑥ 부총장 및 실·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03.3.21., 2008.9.8.>

⑦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3.3.21, 2012.8.10.>

⑧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1 2012.8.10.>

⑨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이하 이 정관에서 말하는 교원은 대학교육기관 강사를 제외한다) <신설 2020.3.1.>

제 2 관 신분보장

**제3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2.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8.10., 2017.2.9.>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3.2.15.>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3.2.15.>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6.10.17., 2008.3.18, 2012.8.10., 2017.2.9.>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7.2.9.>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3.2.15.>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신설 2013.2.15.>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13.2.15.>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36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6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6.10.17., 2008.3.18, 2017.2.9.>
7. 제3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2.15.>

9. 제36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2.15.>

**제38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된다.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6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6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15.>

**제4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삭제 <2017.2.9.>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개정2017.2.9.>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2.9.>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 <신설 2017.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7.2.9.>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7.2.9.>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⑦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항을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2.9.>

⑧ 삭제 <2017.2.9.>

**제40조의2(당연 퇴직의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2.9.]

**제40조의3(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2.9.]

**제40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2.9.〕

**제41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의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8.7.〉

**제43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3조의2(명예퇴직)** ① 본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0.〕

**제44조(교원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퇴직한다. 단, 총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3.3.21, 2004.9.24, 2020.3.1. 2021.9.1.〉

###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5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0.17.〉

**제4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겸임 및 초빙교수를 임용 제청하

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8.10., 2020.3.1.>

2. 삭제 <2008.09.08.>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사항 <신설 2003.3.21.>

② 인사위원회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7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8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1.>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2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5인의 위원으로 조직

한다. <개정 2017.2.9.>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법인의 이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부위원은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개정 2017.2.9.>

**제53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2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7.2.9.]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55조(징계의결의 기간)**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7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



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2.9.>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2.9.>

**제6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9.>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④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9.>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9.]

**제60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

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9.]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

<개정 2012.8.10., 2017.2.9.>

② 제60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9.>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2.9.>

**제62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2.9.]

**제6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 3 절 사무직원

**제65조(자격)** ① 직원은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 및 계약직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8.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40조의2(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일반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7.2.9.>

**제66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에 준용한다.

**제6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에 준용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단, 부총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3.1.>

③ 정년에 달하는 자는 정년에 속하는 학기말에 퇴직한다.

**제7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법령 및 정관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6 장 직 제

### 제 1 절 법 인

**제71조(법인사무조직)** ① 법인에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3.1.>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를 두며, 과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절 대 학 교

**제72조(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대학교는 3명 이내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8.9.8., 2013.2.15., 2022.11.10>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 순위에 따라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9.8.>,<개정 2013.2.15., 2022.11.10>

**제73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학처, 사무처, 학생처, 교목실, 기획발전실을 둔다. <개정 2008.9.8., 2013.2.15., 2017.2.9.>

② 각 처(실)에는 처(실)장을 두며, 각 처(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8.9.8, 2013.2.15, 2017.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처·실 및 그 하부조직의 구성과 분장업무는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2017.2.9.>

④ 삭제 <2017.2.9.>

- ⑤ 삭제 <2017.2.9.>
- ⑥ 삭제 <2017.2.9.>
- ⑦ 삭제 <2017.2.9.>
- ⑧ 삭제 <2017.2.9.>

**제74조(부속시설)**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둔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원 또는 3급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3.1.>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

### 제 3 절 정 원

**제74조의2(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별표 제1호], [별표 제2호]와 같다. <신설 2018.6.22.>

## 제 7 장 대학평의회<신설 2006.10.17.>

**제75조(대학평의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76조(평의회의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5. 조교 1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0.17.]

**제77조(교내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에서 각 1명을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위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5.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78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79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0.17.]

**제80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9.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 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0.17.]

**제81조(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17.]

## 제 8 장 보 칙 <조변경 2006.10.17.>

**제82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일보에 공고한다.<조변경 2006.10.17.>

**제8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조변경 2006.10.17.>

**제84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조변경 2006.10.17.>

### 설립 당초의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연령 (세)	주민등록번호	임기 (년)	주 소	
1	이사장	이형자	52	440309-*****	4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260(2/5)
2	이 사	최순영	57	391102-*****	4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260(2/5)
3	“	김장환	62	340725-*****	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73-6 중앙초등학교 관사
4	“	김상복	57	390111-*****	4	서울 서초구 양재동 57 신동아빌라 C-5
5	“	박성수	54	420814-*****	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2-3 개나리APT 35-101호
6	“	윤남중	67	290130-*****	2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21/4) 경남APT 2동 201호
7	“	이수영	50	461009-*****	2	서울 강동구 상일동 152 벽산빌라 2-101 (40/8)
8	“	송용필	58	380225-*****	2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럭키A 103-402
9	“	권성수	45	510502-*****	2	서울 동작구 사당 5동 224-78(10/8)
10	“	전재욱	58	381031-*****	2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22 다락방전도협회 2F 이슬람연구소
11	감 사	김광평	62	341111-*****	2	서울 서초구 양재동 58-2 신동아빌라 B지구 1-1
12	“	김용철	37	590330-*****	1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4번지 아남A 101-50 6호

### 제 9 장 청렴의무 등<신설 2022.11.10.>

**제85조(청렴의무)**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1.10.]

**제86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8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1.10.]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총장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표 제2호]는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 명칭폐지에 따른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보며, 임용기간은 당초 임용기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3.11.10>

법인 직원 정원

직 종	정 원
총 계	4
일 반 직	3
계 약 직	1

<별표 2> <개정 2018.3.1., 2023.11.10>

### 대학교 직원 정원

직 종	정 원
총 계	30
일 반 직	20
계 약 직	10

<별지>

## 재 산 목 록

구분	소 재 지	㎡	평수	시 가	소 유 주	대 표
교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55번지	3,305.8	1,000	7,206,644,000	학교법인 햇불학원	이형자
교사	“	7,698.74	2,328	9,059,838,000	“	“